

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

제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

제1차총무위원회(2005. 2. 2)

1. 심사 경과

가. 2004. 12. 14 : 사천시장제출

나. 2005. 1. 26 : 총무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 71호)

다. 2005. 2. 2 : 제93회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(기획담당관 최학림)

가. 제안 이유

- 노산공원내 위치한 사천시 승공관이 용도 폐지와 함께 건물 철거(멸실)됨에 따라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

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의 폐지.

다. 관계 법령

- 지방자치법

3.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태주)

- 본 폐지조례안은 노산공원내 위치한 사천시 승공관이 용도폐지와 함께

-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임
- 사천시승공관은 시민단체(반공연맹)에서 건립하여 구 삼천포시에 기부채납 하므로써 1971. 12. 28 구 삼천포시 소유로 등기되었음
 - 따라서 기부채납받은 승공관의 관리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73. 7. 2 삼천포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, 1995. 5. 10 사천시가 출범됨에 따라 1995. 6. 1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로 제정되어 그동안 반공간행물 사진 및 간첩노획물 전시회 또는 전시장소와 반공계몽을 위한 집회장소로 활용하면서 삼천포팔각회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였음
 - 그러나 승공관이 건립 된지 33년이 경과되어 기둥의 균열이 생기고 벽체가 낡고 비기 새는 등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계속사용이 불가하여 2004. 5. 11 부터 건물전체에 대한 사용제한을 한바 있음
 - 차제에 본 승공관의 계속존치·관리에 대한 필요성 여부가 대두되어 관련부서에서는 다각적인 검토결과 본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위에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이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문화·관광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
 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제2호 및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. 6. 3 사천시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승공관을 용도폐지하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의결하였음
 - 그래서 2004. 12. 23 건물철거를 완료하고, 건물 멸실 등기를 하였음
 - 건물 멸실을 위한 행정적인 제반 절차를 거쳐 사천시승공관이 멸실되었기 때문에 관련조례를 폐지하여도 특별한 문제점 없음.

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 요지 : 없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 의견 : 없음